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58 발의연월일: 2022. 2. 4.

발 의 자:김승원·강민정·고용진

김용민 · 도종환 · 민형배

박 정・서삼석・양이원영

유정주 • 이병훈 • 천준호

최강욱 • 한병도 • 홍정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현장성과 대면성,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 공연장 등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시청 및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적극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연을 음악·무용·연극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 (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정의하고,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오프라인 공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연의 영상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촉진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의 온라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의 온라인 활동을 장려하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